

	<h2 style="margin: 0;">기관공통지원경비(아) 관리 규칙</h2>		규정번호	6-3-9
			제정일자	2006.06.01
	개정일자	2013.06.01		
	개정번호	Ver.5	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(연구원 포함)의 산학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기관공통지원경비(이하 OH라 함)의 공정한 징구,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OH 회계 및 관리) ① OH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/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 운영한다.

② OH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입금, 출금, 원천징수 등 경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회계담당 부서, OH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.

제3조(OH 징수) ① 공공기관 시행 사업과제의 OH는 계약체결시 사업계획서상에 책정된 OH 금액으로 하되 국가연구개발과제는 매해 고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에 따르며 일반 수탁연구과제는 직접비의 10%를 계상한다.

②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제1항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(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)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OH를 징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사업과제 중 일부를 외부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분
2. 정부기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OH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업
3. 교내 연구지원 과제
4. 일반수탁연구과제중 연구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

제4조(OH 활용) ① 징수한 OH는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하되,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동양미래대학교 총장은 필요시 징수한 OH중 인센티브 지급분을 제외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대학 수입으로 전입할 수 있다.

③ 개별 사업비 중에 편성된 OH 예산 중 당해 학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당해연도 징구한 OH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차학년도 중에 인센티브로 지급될 것이 확실시될 때는 그 목적을 지정하여 이월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에 동양미래대학 및 동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한 모든 OH는 본

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간주한다. 또한 본 규정 시행일 당시 수행중인 사업도 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